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08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우종혁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30.)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 가. 제안이유
○ 관내 학생의 지역 또는 계층 간 발생하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교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안 제5조)
○ 교육격차해소협의회 구성,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및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2023. 8. 21. ~ 8. 25.(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강남구 관내 미래 세대의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기본으로 조성된 교육협의체 기반으로 강남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는데 있음
- 따라서 교육격차¹⁾라는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인 교육거버넌스 체계 구성에 그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교육격차를 제명으로 삼아 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지자체는 대부분 광역으로,
 - 서울시는 이미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강남구 내부 교육격차는 강남구 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1) 「코로나 19 시기의 교육격차 실태 분석: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의 개요를 보면 교육격차 이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할 수 있음(*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자체연구 보고서(안영은 외, 2022, 『서울학생 중단연구 2020』 1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했던 코로나19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였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여 2021년에 수집된 『서울교육중단연구 2020』 1차년도 중학생 자료(data)를 활용하여 가정배경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실태분석 결과를 해석하고자 서울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발생한 격차를 살펴본 결과, 가정돌봄 측면에서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FGI 참여자들은 가정배경에 따라 학생의 관리·지원 정도에 차이가 크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은 혼자 방치된 시간이 길어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다른 집단보다 긴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교육 강화, 가정 내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흥미로운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이 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시기 교육의 ‘결과’ 측면에서 격차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인지적 성취뿐 아니라 사회, 정서와 같은 비인지적 측면에서도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FGI 참여자들은 저소득층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핀셋 지원’이 부족한 점, 기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교육결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 핀셋 지원 제공, 기존 교육격차 정책 간 유기적 통합 및 촘촘한 모니터링 등이 제안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강남구 관내 초중고 학생은 총 1,5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 안 제5조(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사업,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사업 등 “핀셋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의미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조례안 구성상 다소 논리적 맥락이 조화롭지 않은 조문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이며, 제5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 하여 추진한다고 하며, 제6조에서는 또 협의회를 두고 있어 안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교육격차해소협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조례안은 강남구 관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교육 정책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통한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정책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 교육감 또는 교육청의 권한과는 별도로 강남구 지방행정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정책지원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세부사업은 추후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08호

제안일자 : 2023.8.30.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교육격차해소협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구성상 다소 논리적 맥락이 조화롭지 않은 조문(제5조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구청장이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화(안 제5조1항)
-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심사)을 명시(안 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교육격차를” 을 “교육격차 해소” 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
여” 를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로, “추진” 을 “교
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추진” 으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하는”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격차”란 강남구 내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여건,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란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디지털 기기 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 추진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목표 설정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격차해소협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3.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격차해소협회 구성)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해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해소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